

항공안전본부 구조조정센터와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간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수색구조 관련협약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 등 해양사고 시 해상 구조조정본부(이하 MRCC라 한다)와 항공 구조조정센터(이하 ARCC라 한다) 간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색구조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기관)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내 항공기 등 해양사고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원·협조 이행기관은 해양경찰청 MRCC와 항공안전본부 ARCC(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협정서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수색구조구역 등에 적용한다.

②이 협정서의 모든 규정은 양 기관이 부담하고 이행하는 관련 국제협약이나 국내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MRCC”란 선박 또는 항공기 해양사고시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해상 구조조정본부를 말한다.
2. “ARCC”란 항공기 사고시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항공안전본부(항공교통관제소) 항공 구조조정센터를 말한다.
3. “MCC”란 위성조난신호를 처리하는 곳으로 해양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위성조난통신소를 말한다.

4. "LUT"란 MCC에 설치된 위성조난신호수신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MCRC"란 한국항공식별구역(KADIZ)내 항공기 이동을 통제하는 한국공군 소속 중앙항공통제소를 말한다.

제2장 : 수색구조 항공기에 대한 비행지원

제5조(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 ①이 협정서에서 정하는 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은 수색구조만을 목적으로 한다.

②MRCC는 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을 허가한 경우 ARCC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항공기 및 승무원의 국적
2. 승무원의 성명
3.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비행속도 및 호출부호
4. 비행일시 및 경로(기항지, 임무구역, 비행시간, 비행방식 및 비행고도 등 명시)
5. 공지통신 주파수 및 트랜스폰더 등

③ARCC는 MRCC가 허가한 외국 항공구조대의 영공비행 내용을 MCRC 및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수색구조 항공기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④ARCC는 외국의 항공구조대가 인천 비행정보구역내 공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계획을 접수한 경우 다음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MRCC에 통보한다.

1. 항공기 국적 및 승무원
2. 비행일시 및 수색구조 임무 범위(비행지역 또는 경로)
3. 항공기 형식 및 호출부호
4. 비행방식 및 비행고도
5. 기타 필요사항

제6조(아국 항공구조대의 비행) ①MRCC는 아국의 항공구조대가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고자 할 경우 제5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ARCC에 통보한다.

②ARCC는 제1항의 내용을 접수할 경우 관련국 ARCC 등에 통보하여 항공구조대의 비행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MRCC에 통보한다.

제3장 조난정보 등의 확인 및 조치

제7조(조난정보의 확인) ①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색구조 구역 내에서 항공기로부터 조난경보를 접수한 경우 관련정보에 대한 확인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일방은 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통보한다.

③외국으로부터 제1항 관련 정보를 접수한 양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해당국가에 통보한다.

제8조(조난신호의 처리) ①양 기관은 항공기 조난신호 수신시 사실확인을 위한 일방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②일방은 조난신호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고 타방은 신속히 회신한다.

1. 수신 조난신호의 위치
2. 수신 조난신호의 주파수
3. 수신 조난신호의 식별
4. 기타 필요사항 등

③양 기관은 항공기 등록정보 공유 및 전산화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9조(정보의 교환) ①수색구조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한 양 기관간 통신수단은 다음과 같다.

1. MRCC

가. 전화 : 032-883-0461

나. 모사전송 : 032-881-9595

다. 전자우편 : mrcckorea@nmpa.go.kr

라. 항공고정통신망(AFTN) : RKSSYRYX(해양경찰청 항공대 운항실)

2. ARCC

가. 전화 : 032-880-0250~2

나. 모사전송 : 032-889-5906

다. 전자우편 : aisd@moct.go.kr

라. 항공고정통신망(AFTN) : RKRRYCYX

3. MCC(LUT)

가. 전화 : 042-861-2330

나. 모사전송 : 042-861-2331

다. 전자우편 : komcc1@konet.net

②양 기관은 제1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4장 조난신호수신단말기 운용

제10조(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유지·보수) ①ARCC에 설치된 조난신호 수신단말기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ARCC에 있다.

②MCC(이하 LUT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조난신호수신단말기에 탑재된 위성조난신호 수신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치·수정·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③MCC(LUT)는 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운영 소프트웨어의 설치·수정·업그레이드 등을 할 경우 사전에 ARCC에 통보한다.

제11조(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운용)

①MCC는 조난신호수신단말기 운영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사실을 ARCC로부터 통보 받았을 경우 정상작동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②MCC는 조난신호수신단말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1. 관계직원 시설 방문시 교육 및 안내
2.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 방문교육 실시
3. 운용 매뉴얼 및 관련자료 제공 등

부 칙

1. (효력발생) 이 협정서는 200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합의서의 개정 및 해지) 이 협정서는 매년 1회(체결일 기준 30일 전) 정기 검토하며, 협정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하거나 해지(30일전 문서로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이나 해지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다.
3. (합의서의 해석) 이 협정서의 활용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4.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4. 9. 2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관제소장

해양경찰청 구난통신과장

서기관 정보화

총경 김용규

김 보 화.

김 용 규